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005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승계지원 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신설	4

I. 개요

1.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00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13.

(3) 회 부 일 : 2026. 1.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약 805만 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약 804만 개에 달하여 기업 수 비중 99.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기업 종사자 약 2,341만 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 수 약 1,896만 명으로 81.0%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 매출액 추정치 약 7,490조 원 중 중소기업 비중이 3,309조 원으로 약 4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기업 수 기준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며, 일자리 기준으로도 국민 소득의 높은 비중을 책임지는 한편, 매출 기준으로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경제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대표자가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사망

하는 경우 막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로 인하여 승계자 지분율이 하락하여 채권 은행으로부터 대출 회수 통보를 받으며 흑자도산 하거나 생산 기반의 매각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기업 승계 실패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심각한 일자리 소멸이 발생하고 있음.

반면, 기업의 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경우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전 세계 장수 기업의 41.3%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감면 혜택과 산업기술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경제 근간을 이루면서 높은 일자리 비중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국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해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원활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중소기업의 승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승계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민법」 상 유류분 적용 특례를 규정하면

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안 제30조8의 신설), 승계지원 등록기업 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 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9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승계지원 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신설(김동아의원안)

현행	개정안						
☐ < 신설 >	☐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대상: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계지원이 승인된 중소기업 ○ 요건 - (피승계자)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한 기업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60세 이상 증여자 - (승계자) 피승계자로부터 중소기업을 승계(수증)하는 18세 이상 자연인, 비영리법인, 조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 승인 ○ 과세특례 ① 10억원 공제 ②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하여 아래 세율 적용 <table><tr><th>과세표준</th><th>200억원 이하</th><th>200억원 초과</th></tr><tr><td>세율</td><td>5%</td><td>10%</td></tr></table> ※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동시적용 불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세율	5%	10%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세율	5%	10%					
☐ < 신설 >	☐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 대상: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자 ○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 ○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서의 효력이 중단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유예된 세금을 납부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승계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¹⁾의 의결을 전제로, 승계지원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 및 납부 유예의 근

1)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006호

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 현행법²⁾은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증여자인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가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후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요건	(증여자)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증여세 신고기한 내 대표이사 취임.
내용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적용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600억원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건 수는 2020년 222건에서 2024년 50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기업 수 대비 동 제도의 이용실적은 저조³⁾한 실정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결정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222	267	410	314	508

* 국세통계포털, 국세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출액	844	1,152	2,199	1,194	3,031

*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정부

한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대표자가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막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로 인하여 승계자 지분율이 하락하여 채권 은행으로부터 대출 회수 통보를 받으며 흑자도산 하거나 생산 기반의 매각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을 이루면서 높은 일자리 비중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승계 실패로 사업 중단 시 일자리 소멸,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3)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386,335개 업체 중 경영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업체 수 비중은 33.3%에 이릅니다.

□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승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⁴⁾의 의결을 전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계지원 기업으로 등록 승인된 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저율과세하고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젊은 경영자로의 경영권 이양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역동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할 수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경영자 평균연령은 55세로, 연령별로 50대가 36.9%, 60대가 27.9%로 고령층 비중이 높고, 60세 이상 CEO 경영자 비율은 2012년 14.1%에서 2024년 33.3%로 급증하였음. 즉 중소기업 CEO의 3분의 1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남.

[2024년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 분포]

(단위: 개, %)

구분	업체 수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 이상
전체	386,335	0.4	4.5	24.9	36.9	27.9	5.4
소기업	252,262	0.4	4.7	25.6	36.6	27.3	5.4
중기업	134,073	0.3	4.1	23.5	37.5	29.1	5.5

4)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006호

둘째, 다른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은 세금부담이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⁵⁾이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중은 2023년 기준 0.7%로, OECD 평균 0.1%에 비해 0.6%p 높고, G7 국가 평균 0.3%에 비해서도 0.4%p 높은 것으로 조사됨⁶⁾.

[명목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p)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0.3	0.4	0.5	0.7	0.7	0.7	0.4
OECD 평균		0.1	0.1	0.1	0.1	0.1	0.1	0.0
G7	G7 평균	0.2	0.2	0.3	0.3	0.3	0.3	0.1
	캐나다	0.0	0.0	0.0	0.0	0.0	0.0	0.0
	프랑스	0.5	0.6	0.7	0.8	0.7	0.8	0.3
	독일	0.2	0.2	0.3	0.3	0.2	0.2	0.0
	이탈리아	0.0	0.0	0.0	0.0	0.1	0.0	0.0
	일본	0.4	0.4	0.4	0.5	0.5	0.5	0.1
	영국	0.2	0.2	0.2	0.3	0.3	0.3	0.1
	미국	0.1	0.1	0.1	0.1	0.2	0.1	0.0

주: 2023년 OECD 평균은 호주와 그리스를 제외한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수출기업 799개 중 74.3%가 기업승계 이슈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과중한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지적 (한국무역협회, '24.1월)

수출기업 799개 중 42.2%가 상속세, 증여세 납부부담 등 제반 기업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한국무역협회, '24.1월)

중소기업 625개 중 65.3%가 기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에서 '높은 세금부담'을 지적 (중소기업중앙회, '23.4월)
30~40대 벤처 CEO 140명 중 대부분이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 (93.6%)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96.4%)시킨다고 인식 (경총, '23.10월)

6)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332-333p.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⁷⁾와 요건, 과세특례 내용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기업의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장기간 경영되어 온 기업의 승계인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내용이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현행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비교]

구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승계지원 중소기업 과세특례(안)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부동산업 등 시행령 미규정 업종 제한	중소기업. 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 승인
요건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 지분 40% 이상(상장사 20%) 보유 (수증자) 18세 이상 자녀	(피승계자) 60세 이상 거주자.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중소기업 지분 50% 초과 보유 (승계자) 18세 이상 자연인, 비영리법인, 조합
과세특례	① 공제: 10억원 공제 ② 저율과세: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① 공제: 10억원 공제 ② 저율과세: 5%(200억원 초과분은 10%) 세율로 과

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승계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8)(이하 “특별법”)의 의결이 우선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⁹⁾은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계지원 기업으로 등록 승인된 기업”을 과세특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세특례 대상은 조세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과세특례 대상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되느냐에 따라 얼마만큼 조세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임.

다만, 현재 특별법¹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계지원 신청서를 심사하여 승인하거나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 기준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승계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범

8)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006호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005호)

제30조의8(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①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승계자인 거주자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주식, 출자지분, 사업용자산 등(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피승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5(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0)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006호)

제8조(중소기업 승계지원 신청 및 등록) ①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승계에 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최근 10개년 재무제표, 최근 10개년 주주명부 등 기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2. 기업 지분 및 자산 이전 방법
3. 기업승계에 따른 고용·기술·거래처 승계 방안
4. 기업승계 후 사업 재편을 통한 경영성과 확대 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승계지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승인하거나 보완을 요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른 지원기관에서 승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완료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승계지원 등록기업 유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 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참고로,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¹¹⁾ 중임.

문 의 처
02)6788-5161

11) 2026.2.10.. 기준 전체회의 미상정